



수 원 지 방 법 원

제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5구합61683 기타(노동)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¹⁾ ○○○○○○공사²⁾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송○○, 유○○, 박○○, 유○○, 서○○, 김○○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11. 2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5. 3. 2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한 매각불허결정을 취소한다.

1) 공동피고인 ○○시장과 B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원고는 피고의 지사인 '○○○○○○공사 ○○○○지역본부'라고 적었으므로 바로잡는다.



이 유

1. 지방세기본법 제98조 제3항 본문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이 법에 따른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절차에서의 처분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서 제기하여야 하고, 전심절차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가 기간을 도과하는 등으로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 항고소송은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두24297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으로 피고가 대행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공매절차에서의 매수신청자로서, 피고가 2025. 3. 24. 매각대금이 체납세액보다 우선하는 B의 임대차보증금을 변제하기에도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매각불허결정을 하자 그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이 법원이 석명준비명령을 통해 지적하자 원고는 소를 취하했으나 피고가 부동의해 소송이 계속되었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각하한다.

재판장 판사 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1-27

판사 김○○

판사 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1-27

(별지)

부동산 목록

○○도 ○○시 ○○구 외 2필지 호

대 116.3905 ㎡ 지분(총면적 64,468.1㎡ 64468.1분의116.3905 지분)

임야 58.244 ㎡ 지분(총면적 32,270㎡ 32270분의58.244 지분)

건물 119.567 ㎡

끝.